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학업이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수업

제2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②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학기종료일까지 납입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하다.<신설 2012.12.21>

제3조(학점단위등록) ① 9학기 이상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최저학점에 9학점 이하 미달한 자와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단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학기 및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학점단위등록금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6,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해당액으로 한다. 재입학하는 학생 중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학점단위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수강신청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류기간에는 학점단위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은 교양, 전공으로 구분하며 학칙36조에 의한 매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8.25>

1.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2. 미 취득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타 학부(과, 전공)의 실험·실습·실기과목 및 타과 이수불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4. 교과목의 배정학점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5. 분반이 지정되어 있는 과목은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자는 소정기일 내에 확정된 수강신청 내역을 우리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학기당 16~17학점으로 한다.

⑤ 매학기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9학점으로 하며, 9학점 미만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단, 최종 졸업학기 이후에는 수강신청 최저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 없이 16학점 이상 취득한자는 최대 신청학점을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 수 이하로 제한한다.<신설 2012.12.21>

⑦ 캠퍼스 간에는 교양 및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4.3.1.><개정

2014.8.25.><개정 2019.1.23.>

1. 재학생들이 소속캠퍼스에서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을 타 캠퍼스에서도 이수 할 수 있다.<신설 2019.1.23.>
 2.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총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신설 2019.1.23.>
 3. 원격강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은 학년, 학점 제한 및 캠퍼스의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신설 2019.1.23.>
 4. 복수전공, 부전공은 캠퍼스 간 학점 이수학점 24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19.1.23.>
- ⑧ 원격교과목에 대해서 수강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원격수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1.23.>

제5조(수강취소) ① 학생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6학점이내로 소정의 기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Drop)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는 지정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와 소속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우리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제6조(재이수) ① 학생은 기 이수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로 재이수를 신청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② 학생이 기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재이수 신청교과의 성적은 당초의 취득성적과 재이수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수강정정)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강승인 불허) ① 수강신청 또는 정정 신청한 교과목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승인 및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학기 취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폐강된 교과목
2. 이 규정 제4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르지 않은 교과목
3. 학칙 제25조에 의한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
4. <삭제 2014.8.25>

② 전항 제3호의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선정은 총장이 학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전 과목이수의 포기) 등록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아니하거나 수강신청 후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등록회수에 포함시키고 학사경고의 대상이 된다.

제10조(폐강) 수강신청자가 일정 인원 이하인 과목은 폐강하고 타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폐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과목분반 및 수강제한) ① 적정 수강인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한 과목은 강의실을 변경하거나 분반할 수 있다.

② 과목의 특성 및 교육목적상 필요할 경우 수강대상 학과 및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분반 및 수강대상 학과와 인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담당교수는 학부장과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반 및 수강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성적처리

제12조(성적평균) ① 학업성적의 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평점(실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균성적은 소수점 둘째자리(실점인 경우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미만은 반올림한다.

③ 성적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신청학점 수
2. 평점합계
3. 평균(백분위)성적
4. <삭제 2018.11.5.>

제13조(시험 및 평가) ①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시험은 반드시 수강신청한 반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다른 반에서 응시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학업성적의 등급별 비율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다만,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A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A학점이 30% 미만일 경우 누적비율에 의하여 B학점 이상을 80%까지로 적용하며, B학점 이상이 80% 미만일 경우 누적비율에 의하여 C학점 이상을 100%로 적용한다.

등급	A	B	C	D	F
비율(%)	10~30%	20~50%	0~40%	0~50%	0~50%

※ 수강인원이 20명 이하 및 팀티칭 교과목인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 전공실기과목은 A등급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평가의 기준은 담당 교·강사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의 성적평가 반영 비율에 따른다.

⑥ 학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할 경우는 7일 이내에 추가시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공주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 그리고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⑦ 교수 자녀 수강시 최종 성적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다.<신설 2019.2.25.>

1. 교원의 해당 자녀 입학시 교학지원처로 신고함은 물론 부모과목 수강시 신고해야 한다.
2. 출석·과제제출·시험 등 성적산출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관련내용을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최소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 상기 사항을 미 준수 하였을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입대휴학자의 성적평가) 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 학기말 시험 전에 입대 휴학한 자는 조기 시험을 신청해야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입대휴학 해당자는 휴학원과 함께 조기시험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험감독) 시험감독은 당해 교과목 교·강사로 한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교·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시험부정행위자 처벌) ①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대리시험의 경우는 청탁자와 응시자 쌍방의 당해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시험장외 답안지 작성의 경우도 동일하다.
2. 기타 부정행위는 당해 과목을 실격하고 그 이후 시험과목도 4학점을 더하여 실격 처분한다. 다만,

4-3-0-2 학업이수에 관한규정

해당과목 이후 분이 4학점 미만일 때에는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감독교수의 증언, 증거물에 의하여 소속 학부(과)장이 처벌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총장은 처벌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출석성적 및 출석인정) ① 출석성적은 당해학기 성적종합평가에 20%를 반영한다.

② 한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하되 학기 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로 하여 기산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학지원처장,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이 발급하는 공결 및 유계결석 확인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2. 학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자(홍보, 공연, 대회참가, 대회참가를 위한 합숙훈련 등) (해당기간)
 3.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4. 병사관계(신체검사) (통지서 기재일자)
 5.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7일)
 6. 본인의 출산 : 20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7. 본인의 결혼 (7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9. 등교가 불가능한 전염병, 질병, 골절 등의 진단이 있는 경우 (2주 이내)
 10.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한 자 (해당기간)
- ⑤ 공결 및 유계결석 대상자일지라도 학기중 공결일수(시간수) 및 유계결석 일수(시간수) 총일수(시간수)가 1/4이상 넘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결 및 유계결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⑦ 조기취업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교무지원과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17.>

제18조(체육특기자 특별조치) ① 매학기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성적을 특별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 내용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체육특기자가 훈련에 소홀하거나 교내외의 생활이 불량하여 특기자로서 본분에 어긋날 때에는 전항의 특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
2. 이규정 제16조에 의한 성적 취소
3.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 신청한 과목 이외의 과목의 성적
6. 교수가 자녀의 강의수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여한 성적<신설 2020.12.15.>

제19조의2(등록금 일부 미납자의 성적 처리) 등록금 일부미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1. 당해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학기 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보되고 등록금 전액 납부시에는 즉시 성적이 인정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당해학기 성적이 취소된다.
2. 인정받지 못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지 아니하며, 수학기간으로만 표기한다.<조선철

2012.12.21>

제20조(성적공시 및 이의신청)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한 성적은 소정기일 내에 우리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을 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별도의 성적 공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공시 기간 내에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성적정정) 학기말 성적을 제출한 후에 그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담당교수는 답안지(과제물 또는 기타 평가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신청서 및 사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2조(성적통고) <삭제 2020.12.15.>

제23조(학사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 하고,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고한다.

1. 재학 중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자
2. 이 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

② 전항의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

③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 횟수가 통산 4회에 해당 할 때에는 제적 처분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졸업 또는 수료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학점단위등록자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자에게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기도중 학적변동자의 성적) ① 학기도중 휴학 또는 제적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5.>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기말시험 전에 입영휴학 자는 입영일전까지 과목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5.>

③ <삭제 2020.12.15.>

제25조(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되 편입한 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이하“이수지정과목”이라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평점 평균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업 성적만으로 산정한다.

③ 학적부 정리는 인정학점의 계만을 등재한다.

④ 편입생에 대한 학력조회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행하고 학력조회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본인을 출석시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편입학을 취소한다.

⑤ 편입학의 시행과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학시행규정에 의한다.

제25의2(특별학점인정) ①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분야에 대한 창업을 창업인턴십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다른 대학과 창업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류학점은 소정의 범위 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조신설 2014.3.1>

제26조(성적불량과목의 포기) <조삭제 2014.8.25>

제27조(졸업 이수학점) 졸업 이수학점은 [별표1] 과 같다. 단, 전공학점은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27조 2(순수외국인 졸업인증제) 제27조에 의거 졸업 이수학점을 이수하여도 순수외국인 유학생인 경우 한국어 능력 인증 기준(부모학생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에 한하여 졸업시까지 [별표1-2] 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조신설 2022.04.05>

제4장 휴학·복학·재입학

- 제28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휴학 회수 초과는 예외로 한다.
1.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
 2.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 휴학
 3.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4. 휴학기간 초과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
 5. 유급에 따른 휴학
 6. 임신·출산·육아에 의한 휴학<개정 2013.12.4>
 7. 창업휴학<신설 2014.3.1>
- 제29조(일반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 및 재입학·편입학 학생은 군 입영 또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 및 총장이 질병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3.12.4.><개정 2020.12.15.>
③ 등록한 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시기에 따라 학칙 제51조와 같이 보전된다.
④ 삭제, 조이동 제29조의 1<개정 2014.3.3>
- 제29조의1(육아휴학)**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 학생은 최장 1년(2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여학생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을 각각의 경우마다 최장 1년씩 3년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3.12.4.><조신설 2014.3.1>
- 제29조의2(창업휴학)** ①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③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학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초 1개월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조신설 2014.3.1>
- 제30조(입대휴학)** ① 재학 또는 일반 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영하기 10일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휴학을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등록한 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이내에 입영 휴학한 경우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은 전역 후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 3이후에 입영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목변경 2014.3.1>
- 제31조(휴학취소)** ① 일반휴학을 신청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영휴학을 신청한 자가 귀향 또는 입영연기 되었을 때는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2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일반휴학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공공기관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영휴학한 자는 전역 후 학기 개시일이 2회 지나기 전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아니할 때는

제적된다. 다만, 휴학연장에 의한 초과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재입학) ① 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입학홍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3.><개정 2021.7.22.>

② 재입학하는 학년은 제적 당시의 재학 학년을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로 인하여 지정된 학부(과)에 재입학하는 학생은 취득학점 등에 따라 학년을 재 사정 할 수 있다.

제5장 교내 전부(과)

제35조(자격) 교내 전부(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7.05.10.><개정 2021.04.16.>

제36조(허용범위 및 절차) ① 교내 전부(과)는 제2학년과 3학년, 4학년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05.10>

② 교내 전부(과) 희망자로서 전조의 자격을 갖춘 자는 소정기간 내에 전출 및 전입학부(과)의 전공주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과)원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부(과)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일캠퍼스가 아닌 경우에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3.1><개정 2018.11.5>

제37조(이수과목) 전부(과)한 자는 전부(과)가 허용된 학부(과),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 취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학부(과)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능력별 조기졸업

제38조(자격) ① 능력별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25 이상으로서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최저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 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 자로 한다. 다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의 조기졸업 평점평균은 4.0이상인 자로 한다.

② 능력별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능력별 조기졸업신청서를 학부(과)장을 경유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계절학기

제39조(수강대상) 계절학기는 재학생으로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40조(이수학점)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학칙 제25조에도 불구하고 6학점 범위내로 한다.

제41조(개설과목)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취득학점은 이수 구분대로 인정한다.

제42조(수강료) 계절학기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43조(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①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0.8.>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라 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0.8.>

제43조의 2(신청자격)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유

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조신설 2014.3.1.><개정 2021.10.8.>

제43조의 3(유예기간) 1회에 1개 학기씩 최대 4개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조신설 2014.3.3.><개정 2021.10.8.>

제43조의 4(신청절차) 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조신설 2014.3.1.><개정 2021.10.8.>

② 삭제<조신설 2014.3.1.><삭제 2021.10.8.>

제43조의 5(유예조건)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21.10.8.>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개정 2021.10.8.>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성적평가는 재학생 기준으로 처리한다.<개정 2021.10.8.>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한다.<조신설 2014.3.1.><개정 2021.10.8.>

제43조의 6(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①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중 학점이 부과되는 과목을 수강신청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1.10.8.>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조신설 2014.3.1.><개정 2021.10.8.>

제43조의 7(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졸업처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유예를 한 경우 다음 학기 졸업시점의 졸업기준으로 재사정하지 않으며, 유예확정 시기의 졸업사정 결과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조신설 2021.10.8.>

부 칙(2008.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더불어 학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7항의 조기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0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졸업이수학점]

졸업 학 점 구 성 표

학번	교 양			전 공				일반 (자유)	졸업 학점	비 고
	필수	선택	계	전필	전선	계기	소계			
2001	16	12	28	16-58	0-22	8	56	56	140	학과제
2002	12	8	20	12-30	22-40	4	56	64		학부제
2003	12	12	24	14-24	28-38	4	56	60		
2004	0	16	16	18-22	34	0-4	56	68		
2005	0	16	16	18-22	32-44	0-4	56	68		
2006	0	16	16	18-22	32-44	0-4	56	68		
2007	0	16	16	18-22	32-44	0-6	56	68		
2008	0	16	16	18-20	32-40	0-4	50	64		

학번	교 양			전 공				일반 (자유)	졸업 학점	비 고
	필수	선택	계	전인/ 전필	전심/ 전선	계기/ 전기	소계			
2009~	4-6	14-16	20	0-42	0-42	6	48	62	130	
2013~	6	14	20	18	24	6	48	62	130	
2015~	6-7	13-14	20	18	24	6	48	62	130	
2019~	15-18	22-25	40	12	36	-	48	42	130	

[별표 1-1 복학생(재입학포함)에 관한 최저졸업 학점수표]

복학생(재입학 포함)에 관한 최저졸업 학점수표

기등록 및 이수학기 수	잔여학기	최저졸업학점 (졸업학점 : 130)	비고
1	7	130	
2	6	132	
3	5	134	
4	4	136	
5	3	138	
6	2	140	
7	1	140	

[별표 1-2 순수외국인 졸업 이수 TOPIK 인증 기준] <신설 2022.04.05>

순수외국인 졸업 이수 TOPIK 인증 기준표

계 열	TOPIK 급수
인문사회	TOPIK 4급 이상 또는 예원예술대학교 한국어 자체능력시험(Y-TOPIK) 4급 이상
예·체능	TOPIK 3급 이상 또는 예원예술대학교 한국어 자체능력시험(Y-TOPIK) 3급 이상

[별표 2 평점평균의 실점환산 기준표] <개정 2013.12.4>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4.50	100	4.00	94.3	3.50	88.6	3.00	82.9	2.50	77.1	2.00	71.4	1.50	65.7
4.49	99.9	3.99	94.2	3.49	88.5	2.99	82.7	2.49	77.0	1.99	71.3	1.49	65.6
4.48	99.8	3.98	94.1	3.48	88.3	2.98	82.6	2.48	76.9	1.98	71.2	1.48	65.5
4.47	99.7	3.97	93.9	3.47	88.2	2.97	82.5	2.47	76.8	1.97	71.1	1.47	65.4
4.46	99.5	3.96	93.8	3.46	88.1	2.96	82.4	2.46	76.7	1.96	71.0	1.46	65.3
4.45	99.4	3.95	93.7	3.45	88.0	2.95	82.3	2.45	76.6	1.95	70.9	1.45	65.1
4.44	99.3	3.94	93.6	3.44	87.9	2.94	82.2	2.44	76.5	1.94	70.7	1.44	65.0
4.43	99.2	3.93	93.5	3.43	87.8	2.93	82.1	2.43	76.3	1.93	70.6	1.43	64.9
4.42	99.1	3.92	93.4	3.42	87.7	2.92	81.9	2.42	76.2	1.92	70.5	1.42	64.8
4.41	99.0	3.91	93.3	3.41	87.5	2.91	81.8	2.41	76.1	1.91	70.4	1.41	64.7
4.40	98.9	3.90	93.1	3.40	87.4	2.90	81.7	2.40	76.0	1.90	70.3	1.40	64.6
4.39	98.7	3.89	93.0	3.39	87.3	2.89	81.6	2.39	75.9	1.89	70.2	1.39	64.5
4.38	98.6	3.88	92.9	3.38	87.2	2.88	81.5	2.38	75.8	1.88	70.1	1.38	64.3
4.37	98.5	3.87	92.8	3.37	87.1	2.87	81.4	2.37	75.7	1.87	69.9	1.37	64.2
4.36	98.4	3.86	92.7	3.36	87.0	2.86	81.3	2.36	75.5	1.86	69.8	1.36	64.1
4.35	98.3	3.85	92.6	3.35	86.9	2.85	81.1	2.35	75.4	1.85	69.7	1.35	64.0
4.34	98.2	3.84	92.5	3.34	86.7	2.84	81.0	2.34	75.3	1.84	69.6	1.34	63.9
4.33	98.1	3.83	92.3	3.33	86.6	2.83	80.9	2.33	75.2	1.83	69.5	1.33	63.8
4.32	97.9	3.82	92.2	3.32	86.5	2.82	80.8	2.32	75.1	1.82	69.4	1.32	63.7
4.31	97.8	3.81	92.1	3.31	86.4	2.81	80.7	2.31	75.0	1.81	69.3	1.31	63.5
4.30	97.7	3.80	92.0	3.30	86.3	2.80	80.6	2.30	74.9	1.80	69.1	1.30	63.4
4.29	97.6	3.79	91.9	3.29	86.2	2.79	80.5	2.29	74.7	1.79	69.0	1.29	63.3
4.28	97.5	3.78	91.8	3.28	86.1	2.78	80.3	2.28	74.6	1.78	68.9	1.28	63.2
4.27	97.4	3.77	91.7	3.27	85.9	2.77	80.2	2.27	74.5	1.77	68.8	1.27	63.1
4.26	97.3	3.76	91.5	3.26	85.8	2.76	80.1	2.26	74.4	1.76	68.7	1.26	63.0
4.25	97.1	3.75	91.4	3.25	85.7	2.75	80.0	2.25	74.3	1.75	68.6	1.25	62.9
4.24	97.0	3.74	91.3	3.24	85.6	2.74	79.9	2.24	74.2	1.74	68.5	1.24	62.7
4.23	96.9	3.73	91.2	3.23	85.5	2.73	79.8	2.23	74.1	1.73	68.3	1.23	62.6
4.22	96.8	3.72	91.1	3.22	85.4	2.72	79.7	2.22	73.9	1.72	68.2	1.22	62.5
4.21	96.7	3.71	91.0	3.21	85.3	2.71	79.5	2.21	73.8	1.71	68.1	1.21	62.4
4.20	96.6	3.70	90.9	3.20	85.1	2.70	79.4	2.20	73.7	1.70	68.0	1.20	62.3
4.19	96.5	3.69	90.7	3.19	85.0	2.69	79.3	2.19	73.6	1.69	67.9	1.19	62.2
4.18	96.3	3.68	90.6	3.18	84.9	2.68	79.2	2.18	73.5	1.68	67.8	1.18	62.1
4.17	96.2	3.67	90.5	3.17	84.8	2.67	79.1	2.17	73.4	1.67	67.7	1.17	61.9
4.16	96.1	3.66	90.4	3.16	84.7	2.66	79.0	2.16	73.3	1.66	67.5	1.16	61.8
4.15	96.0	3.65	90.3	3.15	84.6	2.65	78.9	2.15	73.1	1.65	67.4	1.15	61.7
4.14	95.9	3.64	90.2	3.14	84.5	2.64	78.7	2.14	73.0	1.64	67.3	1.14	61.6
4.13	95.8	3.63	90.1	3.13	84.3	2.63	78.6	2.13	72.9	1.63	67.2	1.13	61.5
4.12	95.7	3.62	89.9	3.12	84.2	2.62	78.5	2.12	72.8	1.62	67.1	1.12	61.4
4.11	95.5	3.61	89.8	3.11	84.1	2.61	78.4	2.11	72.7	1.61	67.0	1.11	61.3
4.10	95.4	3.60	89.7	3.10	84.0	2.60	78.3	2.10	72.6	1.60	66.9	1.10	61.1
4.09	95.3	3.59	89.6	3.09	83.9	2.59	78.2	2.09	72.5	1.59	66.7	1.09	61.0
4.08	95.2	3.58	89.5	3.08	83.8	2.58	78.1	2.08	72.3	1.58	66.6	1.08	60.9
4.07	95.1	3.57	89.4	3.07	83.7	2.57	77.9	2.07	72.2	1.57	66.5	1.07	60.8
4.06	95.0	3.56	89.3	3.06	83.5	2.56	77.8	2.06	72.1	1.56	66.4	1.06	60.7
4.05	94.9	3.55	89.1	3.05	83.4	2.55	77.7	2.05	72.0	1.55	66.3	1.05	60.6
4.04	94.7	3.54	89.0	3.04	83.3	2.54	77.6	2.04	71.9	1.54	66.2	1.04	60.5
4.03	94.6	3.53	88.9	3.03	83.2	2.53	77.5	2.03	71.8	1.53	66.1	1.03	60.3
4.02	94.5	3.52	88.8	3.02	83.1	2.52	77.4	2.02	71.7	1.52	65.9	1.02	60.2
4.01	94.4	3.51	88.7	3.01	83.0	2.51	77.3	2.01	71.5	1.51	65.8	1.01	60.1
												1.00	60.0

